「아산 모종 금호어울림」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 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 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 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Ι

공급개요 및 일정

■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588-1일원

■ 공급규모 : 지하2층 ~ 지상23층, 4개동 총 463세대(일반분양311세대) ■ 입주예정시기 : 2022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 주택 구분 | 즈태혀 | 타입 | | 고그 | | | | |
|----------|-----------------------|-----|----------|---------|----------|--------------------|----------|-----------|
| |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 | 세대별 공급면적 | | |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 면적 | 공급 세대수 |
| |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공급면적 | (지하추차장등) | 면적 | |
| 민영 주택 | 059.9666A | 59A | 59.9666 | 21.4712 | 81.4378 | 40.0695 | 121.5073 | 79 |
| | 059.9256B | 59B | 59.9256 | 21.7747 | 81.7003 | 40.0421 | 121.7424 | 24 |
| | 084.9715A | 84A | 84.9715 | 28.6766 | 113.6481 | 56.7777 | 170.4258 | 134 |
| | 084.9493B | 84B | 84.9493 | 28.7471 | 113.6964 | 56.7629 | 170.4593 | 74 |
| | 공급세대 합계 | | | | | | | |

■ 기관별 배정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85m²이하 민영주택 10% 범위 내 공급

| 구분 | | 59A | | 59B | | 84A | | 84B | | 소계 | |
|-----------|---------|-----|----|-----|----|-----|----|-----|----|----|----|
| | | 확정 | 예비 | 확정 | 예비 | 확정 | 예비 | 확정 | 예비 | 확정 | 예비 |
| | 충청남도 | 2 | 2 | 1 | 1 | 4 | 2 | 2 | 2 | 9 | 7 |
| 장애인 | 대전광역시 | 1 | 1 | | | 1 | 1 | 1 | 1 | 3 | 3 |
| | 세종특별자치시 | 1 | 1 | | | 1 | 1 | 1 | 1 | 3 | 3 |
| 국가유공자 | | 1 | 1 | 1 | 1 | 2 | 2 | 1 | 1 | 5 | 5 |
| 장기복무제대군인 | | 1 | 1 | | | 2 | 2 | 1 | 1 | 4 | 4 |
| 중소기업근로자 | | 1 | 1 | | | 2 | 2 | 1 | 1 | 4 | 4 |
| 10년이상복무군인 | | 1 | 1 | | | 1 | 1 | 1 | 1 | 3 | 3 |

(단위: 세대)

-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실,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공급면적(m²) x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 특별공급 일정계획(예정)

| 구 분 | 일 정 | 비고 |
|-----------------|---------------------|--|
|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19. 8. 29(목) (예정) | 일간신문 및 당사 홈페이지 (http://www.mjkhapt.com) |
| • 견본주택 개관일 | 2019. 8. 30(금) (예정) | 충청남도 이산시 풍기동 457번지 |
| • 특별공급 접수일자 | 2019. 9. 03(화) (예정) | 아 <mark>파트투유 인터넷청약</mark> (www.apt2you.com)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 2019. 9. 11(수) (예정) | 당사 견본주택 및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 |

※18년 5월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청약시스템 개편으로 인터넷 접수

- ※ 위 일정은 업무추진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방문접수시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10:00 ~ 14:00)

\prod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특별공급 자격요건 및 당첨자선정 방법

| 구분 | 내용 |
|--------------------------------|---|
| 1회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6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기관추천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무주택구성원의 의미 다음 각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조제2호의3 및제4호) 가.주택공급신청자 나.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주택공급신청자의 의계존속(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함께등재되어있는사람 라.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배우자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함께등재되어있는사람 라.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배우자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함께등재되어있는사람 |
| | 마.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배우자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구분 | | | 내용 | | | | |
|-----------------|---|---|--|---|--|--|--|
| 청약 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은 제외)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만 청약 가능함. | | | | | | |
| | |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 | | |
| | 구분 | | 아산시/천안시/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 | 다 | l전광역시 | | |
| | 전용면적 85㎡ 이 | 하 | 200만원 | | 250만원 | | |
|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중 각 해당 기관의 특별공급별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세대구성원 (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추천기관 | | | | | | |
| | 구분 | TTI AU OL 1 | 해당기관 | | | | |
| 신청 | | 「장애인특 | 해당 시·도 지자체 | | | | |
| 자격 | | | 당에 관한 규칙」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 국가유공지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등 | 충남동부보훈지청 | | | |
| | 장기복무제대군인 「 | | | | | | |
| | 10년이상 <u>장기복무군인</u> | 국방부 국군복지단 | | | | | |
| | 중소기업근로자 |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 | | | |
| 당첨자 선정 방법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 「주택공급에 관한 규 - 일반(기관추천) 특별-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 에서 특별공급 신청하 (신청시 주택형 변경 - 일반(기관추천) 특별-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중 선정되지 않은 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 | 의 경우 구칙」제 공급대성 <mark>당급대성 하여야 한 불가, [</mark> 공급 예 공급 예 공급 예 등 등 한며, 를 포함 | 기 <mark>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에서 제외</mark> 비입주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 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 하여야 합니 선순위에 [보한 자만 <mark>일에 인터!</mark> 리며 계약불 에 통보한 신청일에 는 경우 다음 를 선정하드 | 니다. 다라 공급합니다. 신청 가능하며, (APT2you 홈페이지 | | |

■ 특별공급 유의사항

| 모집공고분부터 금융결제원 수행) • 해당 주택형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 주택형 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공급하고 이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신청자 모두를 무작위 추첨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은 일반공급 발표일에 동시 발표. • 특별공급 대상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관련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접수일에 APT2you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하여야 함(서류제출 없음)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10:00~14:00)에서 신청 가능(자격증명 및 구비서류 제출) • 동일주택에 한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청약은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 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신청한 경우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수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가능이 예비입주자 추천 여부는 기관이 결정하고 예비입주자 추천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음(타 유형 특별 공급 미달 시 예비입주자가 당첨될 수도 있음) | • 해당 주택형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 주택형 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공급하고 이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신청자 모두를 무작위 추첨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은 일반공급 발표일에 동시 발표. • 특별공급 대상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관련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 공급 접수일에 APT2you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하여야 함(서류제출 없음)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10:00~14:00)에서 신청 가능(자격증명 및 구비서류 제출) • 동일주택에 한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청약은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 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신청한 경우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가능) • 예비입주자 추천 여부는 기관이 결정하고 예비입주자 추천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음(타 유형 특별 | 구분 | 내용 | |
|--|---|----|--|--|
| 기관추천 대상자가 청약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세대는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기관추천 예비입주기포함)에게 공급 특별공급, 일반공급 동시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 배정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배정 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지위는 무효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포기하고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택 불가 다만, 특별공급 예비입주자가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 기회가 상실된 경우 일반 예비순번 지위 인정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19.2.21.(목) 공고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 | 유의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예비입주자 포함) 및 동호수 배정은 금용결제원에서 전산추첨(18.08.01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금용결제원 수행) 해당 주택형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 주택형 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공급하고 이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신청자 모두를 무작위 추첨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은 일반공급 발표일에 동시 발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관련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 공급 접수일에 APT2you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하여야 함(서류제출 없음)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건본주택(10:00~14:00)에서 신청 가능(자격증명 및 구비서류 제출) 동일주택에 한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청약은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 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신청한 경우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가능) 예비입주자 추천 여부는 기관이 결정하고 예비입주자 추천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음(타 유형 특별 공급 미달 시 예비입주자 포함)도 특별공급 접수일에 청약하여야 당첨자로 확정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입주자 포함)도 특별공급 접수일에 청약하여야 당첨자로 확정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입주자 포함)도 특별공급 접수일에 청약하여야 당첨자로 확정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입주자 포함)도 특별공급 해당 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지위는 무효 특별공급, 일반공급 동시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일반공급 동시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포기하고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택 불가 다만, 특별공급 예비입주자가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 기회가 상실된 경우 일반 예비순번 지위 인정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19.2.21(목) 공고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 |

${ m I\hspace{-.1em}I\hspace{-.1em}I}$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견본주택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457번지

■ 분양홈페이지: http://www.mjkhapt.com

■ 분양문의 : ☎ 041-531-0887

